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99호 2020. 11. 26.(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38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 1
- 사천시 고시 제38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 2
- 사천시 고시 제38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 3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1396호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 ----- 4
- 사천시 공고 제1397호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 ----- 5
- 사천시 공고 제1424호 방치선박(폐선) 제거 공고 ----- 6
- 사천시 공고 제1425호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 ----- 10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1413호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1
- 사천시 공고 제1429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
입법예고 ----- 31
- 사천시 공고 제1441호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0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 699 호

사천시 고시 제2020-38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11. 26.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20-9호 (2020. 7. 16.)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선착장 연장공사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서포면 구랑리 1-9번지선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 신고번호 : 제2020-8
 - 공사기간 : 2020. 04. ~ 2020.12.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 2020.11.18.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699호

사천시 고시 제2020-38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11. 26.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20-10호 (2020. 7. 22.)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PE 접안시설 도교 설치 1식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5-181번지선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 신고번호 : 제2020-9
 - 공사기간 : 2020. 09. ~ 2020. 11.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 2020.11.18.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 699 호

사천시 고시 제2020-38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

2020. 11. 26.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20-11호 (2020. 7. 22.)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PE 접안시설 도교 설치 1식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늑도동 195-6번지선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 신고번호 : 제2020-10
 - 공사기간 : 2020. 09. ~ 2020.11.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 2020.11.18.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699호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9.8>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

사천시 공고 제2020-1396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사 천 시 장 (직인)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사천시장(도시과장)		
	대표자 (성 명)	사천시장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소하천명		고읍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826-111번지 외 12필지		
	면적	234.4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영구점용		
	목적 및 사유	가설창고 설치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 및 관련서류 1부(건설과 비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699호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9.8>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

사천시 공고 제2020-1397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사 천 시 장 (직인)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이구한		
	대표자 (성 명)	이구한	주소	사천시 사남면 종천2길 20
소하천명		종천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사천시 사남면 종천리 661-9번지		
	면적	4㎡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허가일로부터 5년		
	목적 및 사유	배수관로 설치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 및 관련서류 1부(건설과 비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 699 호

사천시 공고 제2020-1424호

방치선박(폐선) 제거 공고

우리시 항포구 및 해안가 등에 선박을 방치하여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해양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소유자가 자진제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 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께서는 2020년 12월 9일(수)까지 사천시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4일

사 천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0. 11. 24. ~ 2020. 12. 9. (16일간)

2. 제거대상선박 : 3척(붙임내역 참조)

3.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유수면 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선박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 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사천시 해양수산과(051-831-3127)로 연락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699호

사천시 공고 제2020 - 1424호

방치선박 제거공고

발 견 장 소		서포면 용현면 신촌리 540번지선 공유수면		
선 박 제 원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FRP선/1톤
관 리 청		사천시	관 리 번 호	2020-01호
제거예정일자		2020. 12. 10. 이후		
제 거 방 법		해체 및 폐기처리(직권 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해 당 없 음		
입찰보증금		해 당 없 음		

방 치 선 박
전 경 사 진



위 선박은 방치선박으로서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0년 12월 9일까지 사천시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사 천 시 장

담당자 : 사천시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055-831-3127)

사 천 시 공 보

제699호

사천시 공고 제2020 - 1424호

방치선박 제거공고

발 견 장 소		서포면 용현면 신촌리 540번지선 공유수면			
선 박 제 원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FRP선/1톤	
관 리 청		사천시		관 리 번 호	2020-02호
제거예정일자		2020. 12. 10. 이후			
제 거 방 법		해체 및 폐기처리(직권 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해 당 없 음			
입찰보증금		해 당 없 음			

방 치 선 박
전 경 사 진



위 선박은 방치선박으로서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0년 12월 9일까지 사천시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

2020 년 11 월 24 일

사 천 시 장

담당자 : 사천시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055-831-3127)

사 천 시 공 보

제699호

사천시 공고 제2020 - 1424호

방치선박 제거공고

발 견 장 소	서포면 용현면 신촌리 540번지선 공유수면			
선 박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제 원	선 적 항	미상	톤 수	FRP선/1톤
관 리 청	사천시		관 리 번 호	2020-03호
제거예정일자	2020. 12. 10. 이후			
제 거 방 법	해체 및 폐기처리(직권 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해 당 없 음			
입찰보증금	해 당 없 음			

방 치 선 박
전 경 사 진



위 선박은 방치선박으로서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으므로 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0년 12월 9일까지 사천시 해양수산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직권으로 제거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사 천 시 장

담당자 : 사천시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 (055-831-3127)

사 천 시 공 보

제699호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9.8>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

사천시 공고 제2020-1425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사 천 시 장 (직인)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정지홍		
	대표자 (성 명)	정지홍	주소	사천시 사천읍 사천대로 1861
소하천명		평기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898-2번지		
	면적	8㎡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허가일로부터 5년		
	목적 및 사유	배수관로 설치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 및 관련서류 1부(건설과 비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699호

사천시 공고 제2020 -1413호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의 완화 및 임대 농기계의 감면대상 확대로 영세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사용료 및 임대조건 위반 시 사용허가 제한 기준의 구체화로 임의해석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기 위함.

2. 주요내용

- 농기계 임대 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 완화(안 제5조제4항 및 별지 제6호서식)
- 농기계 사용자의 자격 신설(안 제7조제2항)
- 농기계 사용료의 구체화(안 제9조 및 별표 1)
- 농기계 임대료 감면 대상의 확대 및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안 제10조)
- 임대조건 위반에 따른 농기계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및 별표 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사 천 시 공 보

제 699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기술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및 문의부서: 사천시장(참조: 기술지원과장)

(우편번호: 52538,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055-831-3881, 팩스: 055-831-6052)

사 천 시 공 보

제 699 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699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를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로, “설치·운영에 관한” 을 “설치·운영에” 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본 조례에 의하여” 를 “이 조례에 따라”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비와 도의 경비” 를 “국비, 도비” 로, “재원 등으로” 를 “등의 재원으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 을 “사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농기계의 원활한 관리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리요원을 담당자와 정비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를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리요원은 농기계 업무 담당자와 농기계 정비요원이 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9호

제7조제1항 중 “신청서” 를 “농기계 임대 신청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자격은 신청일 현재 사천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임차 농기계를 사용할 경작지가 시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용도는 농업용으로 한정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 트랙트, 이앙기, 콤바인 제외” 를 “트랙터, 이앙기 및 콤바인은 제외한다” 로, “1일 사용료는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징수한다” 를 “사용료는 제1항과 같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로부터” 를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0조 규정” 을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목적외” 를 “목적 외” 로, “징수 기준에 의한” 을 “기준에 따른” 으로 한다.

- ① 사용료는 별표 1의 농업기계 사용료 기준표에 따른다.

제10조의 제목 “(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를 “(사용료의 감면)”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유공자로서” 를 “유공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로 하

사 천 시 공 보

제699호

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해 복구 등 시장”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를 “따른”으로, “감면”을 “감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분의1 감면”을 “2분의 1 감액”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시장은 사용자가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농기계 임대조건 위반사유에 따른 사용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99 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의 <u>규정과 관련하여</u>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u>설치·운영에 관한</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따라 ----- ----- ----- <u>설치·운영에</u> ----- -----.</p>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u>본 조례에 의하여</u>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생 략) 	<p>제3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이 조례에 따라</u> ----- -----. 3. (현행과 같음)
<p>제5조(운영·관리) ① 임대사업소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u>국비와 도의 경비</u>, 시비, 사용료수입 <u>재원 등으로</u> 한다.</p> <p>② 임대사업소의 농업기계 장비와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u>시장</u>이 하며,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p> <p>③ (생 략)</p> <p><u><신 설></u></p>	<p>제5조(운영·관리) ① ----- ----- <u>국비, 도비</u> ----- ----- <u>등의 재원으로</u> -----.</p> <p>② ----- ----- <u>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시장은 농기계의 원활한 관리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u></p>

사 천 시 공 보

제 699 호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u>관리요원을 담당자와 정비요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u> <u><신 설></u></p>	<p>제6조(관리요원) ① ----- ----- <u>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u> ② <u>관리요원은 농기계 업무 담당자와 농기계 정비요원이 된다.</u></p>
<p>제7조(임대 및 교육)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u>신청서</u>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임대를 받은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u><신 설></u></p> <p>② (생 략)</p>	<p>제7조(임대 및 교육) ① ----- ----- <u>농기계 임대 신청서</u>----- ----- . ② <u>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자격은 신청일 현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임차 농기계를 사용할 경작지가 시에 소재하여야 한다.</u> 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① (생 략) ② <u>사용허가는 농업용에 한한다.</u> ③ ~ ④ (생 략) ⑤ <u>사용자가 임차한 농기계를 사용 후 지정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등 사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u></p>	<p>제8조(사용허가 기간 및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u>용도는 농업용으로 한정한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p>

사 천 시 공 보

제 699 호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사용료) ① <u>사용료는 농기계 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구입가격의 0.2퍼센트 금액을 1일 사용료로 납부하되, 천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단, 단일기종의 임대료가 일천원 미만일 경우 일천원으로 하며, 두류 정선기 사용료는 포대(40kg)단위로 일천원으로 한다.</u></p> <p>② <u>교육 훈련용 대체농기계(단,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제외)의 1일 사용료는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징수한다.</u></p> <p>③ <u>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사천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u></p> <p>④ <u>제10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 기준에 의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u></p> <p>⑤ · ⑥ (생략)</p>	<p>제9조(사용료) ① <u>사용료는 별표 1의 농업기계 사용료 기준표에 따른다.</u></p> <p>② ----- <u>트랙터, 이앙기 및 콤바인은 제외한다</u> --- <u>사용료는 제1항과 같다.</u></p> <p>③ <u>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u> ----- ---</p> <p>④ <u>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목적 외----- 기준에 따른 -----.</u></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사 천 시 공 보

제699호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u>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u></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유공자로서</u>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p> <p>2. <u>재해 복구 등 시장</u>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② 제1항에 <u>따라</u> 사용료의 <u>감면</u> 또는 면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p> <p>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료의 <u>2분의1 감면</u></p> <p>2. (생략)</p> <p>제11조(사용료의 반환) <u>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u></p> <p>1. ~ 2. (생략)</p>	<p>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 ----- <u>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u></p> <p>1. ----- ----- ----- <u>유공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u> ----- -----</p> <p>2. <u>시장</u>----- -----</p> <p>② ----- <u>따른</u> ----- <u>감액</u> ----- -----.</p> <p>1. ----- <u>2분의 1 감액</u></p> <p>2. (현행과 같음)</p> <p>제11조(사용료의 반환) <u>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u></p> <p>1. ~ 2. (현행과 같음)</p>

사 천 시 공 보

제 699 호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임대 취소 및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사용료를 체납 하였을 경우</u> 2. <u>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u> 3. <u>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u> 4. <u>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u> 	<p>제13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시장은 사용자가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p> <p>② 농기계 임대조건 위반사유에 따른 사용제한 기간은 별표 2와 같다.</p>

사 천 시 공 보

제 699 호

<신 설>

[별표 1]

농업기계 사용료 기준표(제9조제1항 관련)

[1일(8시간 기준) / 단위: 원]

기종	규격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사용료	비고
전기종 및 작업기	자주식 및 부착형	1) 100만원 미만	8,000	
		2)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0,000	
		3)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13,000	
		4)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16,000	
		5)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0,000	
		6)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23,000	
		7)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27,000	
		8)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	31,000	
		9)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35,000	
		10)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39,000	
		11)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55,000	
		12)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72,000	
		13)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94,000	
		14)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110,000	
		15)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	136,000	
		16)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157,000	
		17) 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166,000	
			18) 5,000만원 이상	179,000
※ 위에서 정하지 않은 임대료에 대해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정한 1일 임대료에서 15퍼센트를 감액한 금액으로 한다.				
콩정선작업기		1포대(40kg 기준): 1,000원		

사 천 시 공 보

제699호

<신 설>

[별표 2]

농기계 임대조건 위반사유에 따른 사용제한 기간(제13조제2항 관련)

임대조건 위반사유	사용제한 기간				비 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농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연락두절 포함)		1회	2회	3회	
농기계를 청소 및 세척하지 않고 반납할 경우	2회	3회	4회	5회	
농기계를 무단으로 개조하였을 경우				1회	
농기계 사용 중 파손하여 7일 이내 변상조치 하지 아니한 때			1회	2회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1회	2회	
다른 사람의 농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을 경우(무상, 유상 포함)			1회	2회	
농기계를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1회	2회	
농기계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1회	2회	
그 밖에 농기계 임대와 관련한 지시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회	3회	4회	5회	

※ 사용제한 횟수의 누적합산은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끝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99 호

<현 행>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임대 신청서

사 용 신청서	이 름	(남/여)
	주 소	
	연 락 처	
사 용 신 청 사 항	농기계명	
	수 량	
	사 용 료	
	사용기간	
	작업종류	
	작업면적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농기계를 위와 같이 임대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사천시장 귀하

농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

- 위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조례제8조)
-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 9조)
- 농기계 작업 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통하여 반환하고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례 제12조)
- 임대 농기계를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영업행위, 사용신청 사항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게 됩니다. (조례 제13조)
- 사용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받습니다.(조례 제8조)
-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14조)
- 임대 농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주소: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홈페이지:<http://aml.scnongup.net>

사 천 시 공 보

제 699 호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임대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사용 신청 사항	농기계명					
	수량					
	사용료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작업종류			작업면적		
감면 대상	<input type="checkbox"/> 대상(사유:) <input type="checkbox"/> 비대상					
<p>「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p>						
<p>사천시장 귀하</p> <p style="text-align: center;">농기계 임대조건 및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신청 농기계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사용기간을 지켜야 합니다.(조례 제8조) •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9조) • 농기계를 사용한 후에는 청소 및 세척하여 임대 이전의 상태로 반환하고,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 유무에 대하여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례 제12조) <p><삭 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받습니다. (조례 제13조) •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변상하여야 합니다. (조례 제14조) • 임대 농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p> <p>주소: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홈페이지:http://aml.scnongup.net</p>						
첨부 서류	감면대상일 경우 입증 서류 1부(신청자가 아래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 독립유공자 확인원 • 장애인증명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전자정부법」 제8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서명 또는 인)</p>					

사 천 시 공 보

제 699 호

< 현 행 >

[별 지 제 2 호 서 식]

농기계 사용료 감면(면제)허가 신청서

기종명	형 식	기대번호	작업내용	사용기간	면제사유

「사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제10조에 따라 상기 농기계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면제) 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소속(주소) : 경남 사천시 읍면동 로.길
농 가 명 : (남.여) 서명·날인
전화번호 : (휴대폰)

사천시장 귀하

사 천 시 공 보

제 699호

<개정안>

[별지 제2호서식] 삭 제

사 천 시 공 보

제 699 호

< 현 행 >

[별지 제6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사천시장		주소	
		성명	
		전화번호	전화(055- /휴대폰)
임대차 농기계			
농기계명		수량	
부속작업기		수량	
		수량	
		수량	
임대차기간			
임대료			
농기계 사용계획			
작업종류			
작업면적			

임대차 계약 조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기계종합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농용굴삭기 임차인은 관련 면허증.교육수료증이 있어야 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11. 출고 이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201 년 월 일

임대인 사천시장 인

임차인

(남.여) 인 또는 서명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 055-831-3814 휴대전화 010-8549-3815

사 천 시 공 보

제 699 호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임차인	
사천시장		주소	
		성명	
		전화번호	전화(055- /휴대폰)
임대차		농기계	
농기계명		수량	
부속작업기		수량	
		수량	
		수량	
임대차기간			
임대료			
농기계 사용계획			
작업종류			
작업면적			

임대차 계약 조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6. 출고이후 임차인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모든 임차인은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하며, 농용굴삭기 임차인은 관련 면허증 또는 교육수료증이 있어야 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삭 제>

위와 같이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20 년 월 일

임대인 사천시장 인

임차인

(남.여) 인 또는 서명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 ☎전화 : 055-831-3814 휴대전화 010-8549-3815

사 천 시 공 보

제 699 호

관 련 법 규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99호

사천시 공고 제2020 - 1429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외 2건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나.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다.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급성감염병 대응 및 자연휴양림 운영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원 증원 및 직렬을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사 천 시 공 보

제 699 호

3. 주요내용

①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과장 직급 조정(안제8조의2제1항)

- 녹지공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나. 읍·면·동장의 직급 조정(안 제15조 별표 1)

- 축동면: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 곤명면: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②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 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

나. 기관별 정원 조정(안 제2조 별표)

③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가. 본청의 전결대상사무 조정(안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분장사무 추가 등 업무 현행화

사 천 시 공 보

제 699호

- 나. 읍·면, 동의 전결대상사무 조정(안 제4조제1항제4호 별표 5, 별표 6)
 - 복무관련 전결권을 본청과 동일하게 조정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5.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행정과장)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 2570, FAX : 831- 6021)

사 천 시 공 보

제 699 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699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한국자유총연맹에” 를 “한국자유총연맹 등에” 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을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으로 한다.

별표 1 중 축동면 및 곤명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축동면	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곤명면	곤명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9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행정복지국) ① (생략)</p> <p>②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3. (생략)</p> <p>4.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 <u>한국자유총연맹</u>에 관한 사항</p> <p>5. ~ 9. (생략)</p> <p>③·④·⑤·⑥·⑦·⑧ (생략)</p>	<p>제7조(행정복지국)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새마을·바르게살기운동, <u>한국자유총연맹 등에</u> 관한 사항</p> <p>5. ~ 9. (현행과 같음)</p> <p>③·④·⑤·⑥·⑦·⑧ (현행과 같음)</p>
<p>제8조의2(항공경제국) ① 항공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우주항공과장·산업입지과장·지역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u>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u>, 토지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p> <p>②·③·④·⑤·⑥ (생략)</p>	<p>제8조의2(항공경제국) ① ----- ----- -----, <u>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u>, ----- -----.</p> <p>②·③·④·⑤·⑥ (현행과 같음)</p>

사 천 시 공 보

제 699 호

< 현 행 >

[별 표 1]

읍.면.동장의 직급(제15조제2항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사천읍	사천읍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정동면	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사남면	사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용현면	용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축동면	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공업사무관 .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곤양면	곤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곤명면	곤명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서포면	서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동서동	동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선구동	선구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동서금동	동서금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별용동	별용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향촌동	향촌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남양동	남양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사 천 시 공 보

제 699 호

<개정안>

[별표 1]

읍.면.동장의 직급(제15조제2항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사천읍	사천읍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정동면	정동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사남면	사남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용현면	용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축동면	축동면장	<u>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녹지사무관</u> <u>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u>
곤양면	곤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곤명면	곤명면장	<u>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u> <u>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u>
서포면	서포면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동서동	동서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선구동	선구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동서금동	동서금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별용동	별용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향촌동	향촌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남양동	남양동장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사 천 시 공 보

제699호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조(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 담당관·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면·동의 장에 대한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9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 표】

사천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렬별		기관별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본청							
총합계		959	509(3)	17	153	49(1)	25	117	89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928	507(3)	17	124	49(1)	25	117	89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7	4	1	2					
	행정	1	1							
	기술	1			1					
	행정+기술	4	3	1						
	행정+기술+농촌지도관	1			1					
5급	소계	51	26	2	6	3	1	7	6	
	행정	7	5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11	10	1						
	행정+방송통신	1	1							
	농업+농촌지도관	2			2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2						1	1	
	행정+농업+보건+시설	1						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농업+시설+방송 통신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행정+농업+녹지+방송 통신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환경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간호	3			3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1			1					
6급	소계	246	154	3	26	13	6	30	14	
	행정	49	43	2		4				
	세무	2	2							
	사회복지	1	1							
	공업	1				1				
	환경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3	3							
	시설	15	14			1				
	보건진료	3			3					
	행정+세무	13	9					1	3	
	행정+사회복지	20	11			1	1	3	4	
	행정+농업	8	2		1		2	3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공업	2	2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4			4					
	행정+시설	26	24	1			1			
	행정+전산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식품위생	1						1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간호	4			4					
	공업+시설+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공업+환경	4	2			2				
	행정+공업+시설	9	9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수의+환경	1						1		
	행정+보건+사회복지	1			1					
	행정+녹지+공업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4							
	행정+농업+해양수산	2	1					1		
	행정+농업+녹지	7	3					4		
	행정+세무+농업	3						3		
	행정+세무+사회복지	3						2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5	3					2		
	행정+시설+방송통신	2	2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전산+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4			4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3	2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세무+농업+보건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3						1	2	
	행정+세무+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보건	1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시설+수의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0						0		
	행정+사회복지+농업+수의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수의+환경	0						0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공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0			0					
	행정+운전+방호+위생	2	2							
	행정+사회복지+공업+	1	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세무+사회복지+ 해양수산	1							1	
7급	소계	259	151	3	40	13	5	27	20	
	행정	55	38	2		2	1	9	3	
	세무	6	5						1	
	사회복지	13	2					8	3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3	3							
	보건	4			4					
	의료기술	2			2					
	간호	4			4					
	환경	2	2							
	시설	16	13			2	1			
	수의	2			2					
	보건진료	6			6					
	행정+세무	7	6					1		
	행정+사회복지	11	7			1			3	
	행정+전산	5	4			1				
	행정+농업	5	1		2		1	1		
	행정+공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시설	28	27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1				1				
	보건+간호	3			3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시설	1				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농업+녹지	1			1					
	행정+보건+간호	<u>1</u>			<u>1</u>					
	행정+공업+농업	2	2							
	행정+공업+환경	9	7			2				
	행정+공업+시설	7	6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5	4	1						
	행정+농업+녹지	3	2		1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8	1				2		5	
	행정+농업+시설	6	3					2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세무+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6			6					
	사회복지+세무+수의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간호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행정+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행정+공업+시설+해양 수산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운전	4	2		1	1				
8급	소계	226	109	4	43	10	9	24	27	
	행정	53	22	1		1	5	11	13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세무	2	2							
	사회복지	10	3				2	2	3	
	공업	2	1			1				
	농업	1			1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1			1					
	의료기술	2			2					
	간호	18			18					
	보건진료	4			4					
	시설	14	13			1				
	행정+세무	9	5					1	3	
	행정+사회복지	13	10			1	1		1	
	행정+사서	1				1				
	행정+전산	4	4							
	행정+속기	1		1						
	행정+농업	4	1		1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1			1				
	보건+간호	5			5					
	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시설	21	17			2		1	1	
	행정+해양수산	3	3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2	2						
	행정+농업+녹지	7	2				1	3	1	
	행정+세무+농업	1						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3	1					1	1	
	행정+농업+시설	2	2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시설	1	1							
	보건+공업+환경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5			5					
	행정+사회복지+환경+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환경	1							1	
	행정+농업+녹지+ 해양수산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간호	2			2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행정+공업+시설+방송 통신	1	1							
	운전	5	3		1	1				
	전기운영	2	2							
9급	소계	138	62(3)	4	7	10(1)	4	29	22	
	행정	28	7(3)			2(1)	1	11	7	
	사회복지	6	3				1		2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1	1							
	시설	9	6			1		2		
	세무	2	2							
	보건	1			1					
	환경	1	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세무	1	1							
	행정+방재안전	3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8	8					8	2	
	행정+농업	3			1		1		1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10	9					1		
	행정+속기	1		1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환경	1				1				
	공업+환경	1				1				
	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3							3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공업+ 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시설	4					1	2	1	
	행정+사회복지+보건+ 환경	1							1	

직렬별		기관별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본청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2						2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속기	1		1						
	운전	7	3	2	1	1				
	사무운영	6	3			1		1	1	
	전기운영	1				1				
	방호	3	1			1		1		
지도직 합계		29			29					
지도사	농촌지도사	29			29					
연구직 합계		1	1							
연구사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 합계		-	-							
별정6급상당	비서	-	-							

<개정안>
【별 표】

사천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렬별		기관별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본청							
총합계		964	511(3)	17	155	50(1)	25	117	89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933	509(3)	17	126	50(1)	25	117	89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7	4	1	2					
	행정	1	1							
	기술	1			1					
	행정+기술	4	3	1						
	행정+기술+농촌지도관	1			1					
5급	소계	51	26	2	6	3	1	7	6	
	행정	7	5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11	10	1						
	행정+방송통신	1	1							
	농업+농촌지도관	2			2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1							1	
	행정+농업+보건+시설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농업+시설+방송 통신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u>1</u>	<u>1</u>							
	행정+녹지+환경+시설	<u>1</u>						<u>1</u>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행정+농업+녹지+방송 통신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녹지	<u>2</u>						<u>1</u>	1	
	행정+사회복지+보건+ 환경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간호	3			3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1			1					
6급	소계	246	154	3	26	13	6	30	14	
	행정	<u>50</u>	<u>44</u>	2		4				
	세무	2	2							
	사회복지	1	1							
	공업	1				1				
	환경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3	3							
	시설	15	14			1				
	보건진료	3			3					
	행정+세무	13	9					1	3	
	행정+사회복지	20	11			1	1	3	4	
	행정+농업	8	2		1		2	3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공업	2	2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4			4					
	행정+시설	<u>25</u>	<u>23</u>	1			1			
	행정+전산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식품위생	1						1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간호	4			4					
	공업+시설+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공업+환경	4	2			2				
	행정+공업+시설	9	9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수의+환경	1						1		
	행정+보건+사회복지	1			1					
	행정+녹지+공업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4							
	행정+농업+해양수산	2	1					1		
	행정+농업+녹지	7	3					4		
	행정+세무+농업	3						3		
	행정+세무+사회복지	3						2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5	3					2		
	행정+시설+방송통신	2	2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전산+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4			4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3	2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전산+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농업+보건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3						1	2	
	행정+세무+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 산+보건	1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방송 통신	1	1							
	행정+농업+시설+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수의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간호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간호	2			2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해양수산	1	1							
	행정+운전+방호+위생	2	2							
	행정+사회복지+공업+ 시설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해양수산	1							1	
7급	소계	259	151	3	40	13	5	27	20	
	행정	55	38	2		2	1	9	3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세무	6	5						1	
	사회복지	13	2					8	3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3	3							
	보건	4			4					
	의료기술	2			2					
	간호	4			4					
	환경	2	2							
	시설	16	13			2	1			
	수의	2			2					
	보건진료	6			6					
	행정+세무	7	6					1		
	행정+사회복지	11	7			1			3	
	행정+전산	5	4			1				
	행정+농업	5	1		2		1	1		
	행정+공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시설	28	27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1				1				
	보건+간호	3			3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시설	1				1				
	농업+녹지	1			1					
	행정+보건+간호	<u>1</u>			<u>1</u>					
	행정+공업+농업	2	2							
	행정+공업+환경	9	7			2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공업+시설	7	6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5	4	1						
	행정+농업+녹지	3	2		1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8	1				2		5	
	행정+농업+시설	6	3					2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세무+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6			6					
	사회복지+세무+수의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간호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행정+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행정+공업+시설+해양 수산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운전	4	2		1	1				
8급	소계	229	109	4	46	10	9	24	27	
	행정	53	22	1		1	5	11	13	
	세무	2	2							
	사회복지	11	4				2	2	3	
	공업	2	1			1				
	농업	1			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1			1					
	의료기술	2			2					
	간호	18			18					
	보건진료	4			4					
	시설	14	13			1				
	행정+세무	9	5					1	3	
	행정+사회복지	13	10			1	1		1	
	행정+사서	1				1				
	행정+전산	4	4							
	행정+속기	1		1						
	행정+농업	4	1		1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1			1				
	보건+간호	<u>8</u>			<u>8</u>					
	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시설	<u>20</u>	<u>16</u>			2		1	1	
	행정+해양수산	3	3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2	2						
	행정+농업+녹지	7	2				1	3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3	1					1	1	
	행정+농업+시설	2	2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시설	1	1							
	보건+공업+환경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5			5					
	행정+사회복지+환경+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환경	1							1	
	행정+농업+녹지+ 해양수산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간호	2			2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행정+공업+시설+방송 통신	1	1							
	운전	5	3		1	1				
	전기운영	2	2							
9급	소계	140	64(3)	4	6	11(1)	4	29	22	
	행정	29	7(3)			2(1)	1	11	8	
	사회복지	6	3				1		2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1	1							
	시설	9	6			1		2		
	세무	2	2							
	보건	1			1					
	환경	1	1							
	행정+세무	1	1							
	행정+방재안전	4	4							
	행정+전산	1	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사회복지	18	8					8	2	
	행정+농업	3			1		1		1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10	9					1		
	행정+속기	1		1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환경	1				1				
	공업+환경	1				1				
	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3							3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공업+환경	<u>3</u>	2			<u>1</u>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공업+ 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시설	4					1	2	1	
	행정+사회복지+보건+ 환경	1							1	
	행정+사회복지+환경+ 시설	2						2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녹지+공업+시설	<u>1</u>	<u>1</u>							

직렬별		기관별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본청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속기	1		1						
	운전	6	3	2		1				
	사무운영	5	3			1		1		
	전기운영	1				1				
	방호	3	1			1		1		
지도직 합계		29			29					
지도 사	농촌지도사	29			29					
연구직 합계		1	1							
연구 사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 합계		-	-							
별정6 급상당	비서	-	-							

사 천 시 공 보

제699호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3. 12. 4.>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함으로 설치된 경우에

사 천 시 공 보

제699호

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0.>

1. 시·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군·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그 조사·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도와 관할 시·군·구간 또는 관할 시·군·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9.>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사 천 시 공 보

제699호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 7. 3., 2013. 12. 4.>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99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별표 2] 본청 전결대상사무

소 관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자		담과 당 관장	사 업 소 장	국· 소장	부시장	시 장
			실무자	주사급					
건축과	13.주거환경개선 사업 업무	1.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 수립		기안					○
		2.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읍면동 사업 물량 배정		기안		○			
		3.주택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 추진	기안		○				
		4.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대상지구 지정 입안			기안				○
		나.대상지구 지정 신청	기안			○			
		다.공람공고 고시	기안			○			
		라.주거환경개선계획 입안			기안				○
		마.주거환경개선계획 승인 신청	기안			○			
		바.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지도,감독	기안			○			
		사.주거환경개선사업 용자 결정 통보	기안			○			
	23.기타 농지 전용 관련 업무	1.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기간 연장 승인	기안	○					
		2.용도변경	기안		○				
		3.농지전용 허가 취소	기안		○				
		4.농지전용 협의사항 취소	기안		○				
		5.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결정통보	기안	○					

[별표 5] 읍·면의 전결대상사무

소관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자		부 읍 면 장	읍 면 장
			실 무 자	주 사 급		
읍면	4.복무관리	1.출장신청서 및 근무상황부(연가, 병가, 공가 등)				
		가.읍면장				
		1)관외출장, 연가.공가(시 사전보고)	기안			○
		2)병가(발생즉시 시 보고)	기안		○	
		나.6급이상 소속 직원	기안			○
		다.7급이하 소속 직원	기안		○	

[별표 6] 동의 전결대상사무

소관 별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자		동 장
			실 무 자	주 사 급	
동	4.복무관리	1.출장신청서 및 근무상황부(연가, 병가, 공가 등)			
		가.동장			
		1)관외출장, 연가.공가(시 사전보고)	기안		○
		2)병가(발생즉시 시 보고)	기안	○	
		나.전직원	기안		○

<개정안>

[별표 2] 본청 전결대상사무

소 관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자		담과 당 관장	사업 소장	국· 소장	부시장	시 장	
			실무자	주사급						
건축과	13.주거환경개선 사업 업무	1.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 수립		기안					○	
		2.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읍면동 사업 물량 배정		기안		○				
		3.주택개량사업 및 빈집 정비사업 추진	기안		○					
		4.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대상지구 지정 입안			기안				○	
		나.대상지구 지정 신청	기안			○				
		다.공람공고 고시	기안			○				
		라.주거환경개선계획 입안			기안				○	
		마.주거환경개선계획 승인 신청	기안			○				
		바.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지도,감독	기안			○				
		사.주거환경개선사업 용자 결정 통보	기안			○				
		5.더불어나눔주택사업 추진	기안			<u>○</u>				
		23.기타 농지 전용 관련 업무	1.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납입기간 연장 승인	기안	○					
			2.용도변경	기안		○				
3.농지전용 허가 취소	기안			○						
4.농지전용 협의사항 취소	기안			○						
5.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결정통보	기안		○							
24.건축물 관리	1.건축물 해체신고	기안		<u>○</u>						
	2.건축물 해체완료신고	기안		<u>○</u>						
	3.건축물 해체허가	기안			<u>○</u>					

[별표 5] 읍·면의 전결대상사무

소관별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담당자		부읍면장	읍면장
			실무자	주사급		
	4.복무관리	1.출장신청서 및 근무상황부(연가, 병가, 공가 등)				
		가.읍면장				
		1)관외출장, 연가.공가(시 사전보고)	기안			○
		2)병가(발생즉시 시 보고)	기안			○
		나.6급이하 소속 직원	기안			○

[별표 6] 동의 전결대상사무

소관별	단위업무	세부사무명	담당자		동장
			실무자	주사급	
동	4.복무관리	1.출장신청서 및 근무상황부(연가, 병가, 공가 등)			
		가.동장			
		1)관외출장, 연가.공가(시 사전보고)	기안		○
		2)병가(발생즉시 시 보고)	기안		○
		나.6급이하 소속 직원	기안		○

사 천 시 공 보

제 699 호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9호

사천시 공고 제2020-1441호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청소년육성재단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제명 변경(안 제명)
- 목적 및 법인의 명칭 변경(안 제1조 및 제3조)
- 재단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위탁 사업”에서 “위탁 또는 보조받는 시민 복지사업”으로 확대(안 제5조제5호)

사 천 시 공 보

제 699 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5조의2, 별표 2)
- 임원 중 대표이사 직위 신설(안 제9조 및 제10조)
 - 사무국장 직위 폐지
- 사무국장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10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민원/공개>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 : 52539,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673, FAX : 831-6018)

사 천 시 공 보

제 699 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사 천 시 공 보

제699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를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중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으로 한다.

제5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재단의 청소년”을 “청소년”으로, “사업 수행”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위탁 받은 각종 청소년 관련 사업의 수행”을 “위탁 또는 보조받는 시민 복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사업 등”을 “사업”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99 호

2. 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4. 보호대상 청소년의 보호·지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제1항 중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을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로 “감사 2명으로 한다” 를 “2명의 감사로 구성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대표이사는 정관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이사회” 를 “재단에 이사회”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사장 및 이사” 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를 삭제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9호

제2조(사무국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된 사무국장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99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교육·체육활동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련하고, 청소년들의 상담, 보호·지원, 긴급 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u>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법인의 명칭) 법인의 명칭은 <u>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u>(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p> <p>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재단의 청소년 상담관련 사업 수행</u> 3. <u>재단의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u> 4. <u>재단의 보호대상 청소년 보호·지원 기능의 수행</u> 5.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u>위탁 받은 각종 청소년 관련 사업의 수행</u> 	<p><u>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u>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법인의 명칭) ----- <u>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u>-----.</p> <p>제5조(사업)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u> 3. <u>청소년</u> -----<u>사업</u> 4. <u>보호대상 청소년의 보호·지원</u> 5. ----- ----- <u>위탁 또는 보조받는 시민 복지사업</u>

사 천 시 공 보

제699호

현 행	개 정 안
<p>6.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u>사업 등</u></p> <p><u><신 설></u></p> <p>제9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u>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u> 이 경우, 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② (생략)</p> <p>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이사회</u>를 둔다.</p> <p>② 이사회는 <u>이사장 및 이사</u>로 구성한다.</p> <p>③ <u>이사장은 “부시장” 이 된다.</u></p> <p>④ ~ ⑥ (생략)</p>	<p>6. ----- <u>사업</u></p> <p><u>제5조의2(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u></p> <p>제9조(임원) ① ----- <u>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2명의 감사로 구성한다</u>-----.</p> <p><u>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u></p> <p><u>③ 대표이사는 정관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u></p> <p><u>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u></p> <p>⑤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이사회) ① ----- <u>재단에 이사회</u>-----.</p> <p>② ----- <u>이사장 및 대표이사</u>를 포함한 이사-----.</p> <p><u><삭 제></u></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사 천 시 공 보

제699호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의2(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사무국장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이 한다.</p> <p>③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회 의결 사항의 집행 2. 사무국 제반 업무의 수행 및 소속 사무요원의 지휘·감독 3. 이사회 등에 출석하여 재단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p><삭 제></p>
<p>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사 천 시 공 보

제 699호

[현 행]

[별표 1]

1. 사무국장 채용 자격요건

자 격 기 준	비고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행정경험이 20년 이상인 사람 2. 대학·공공기관의 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에서 강의 또는 연구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대표 또는 임원으로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박사과정을 이수한 후 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 실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5. 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 실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라 함은 청소년(지도학)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등을 말한다.

※ “실무”라 함은 상근한 경우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99호

[개정안]

<삭 제>

사 천 시 공 보

제699호

<신 설>

[별표 2]

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5조2 관련)

항 목	내 용
구성	1.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직원
기능 및 역할	1. 상담복지센터 세부운영 계획 수립 시행 2.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과 교육 3.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5.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6.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치료, 법률서비스, 자활지원 활동 7. 학교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 및 가해 청소년 상담 8.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약물 중독, 자살 등 청소년 위기 상담 9. 청소년안전망 운영 10. 그 밖에 청소년 상담 지원 업무 전반
예산	1. 정부 및 경상남도, 사천시가 출연한 출연금 2. 정부 및 경상남도, 사천시가 지원하는 보조금 3. 기부금품, 수익금 등
임용·복무·보수·자격	1. 법인의 정관 및 내부규정에 따름

※ 이 별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업안내」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을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699호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 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 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